



일리노이주 연장자와 장애인 이민자들을 위한 재정보조  
FINANCIAL ASSISTANCE FOR ELDERLY AND DISABLED IMMIGRANTS  
IN ILLINOIS (KOREAN version)

나는 비 시민권자이다.  
나는 65 세이며 장애인이다.  
나는 사회보장 은퇴금을 타지 못한다.  
내가 현금보조를 받을 수 있는가?

당신은 다음 조항에 해당되는 사람이면 사회보장 보조 (SSI) 와/또는 맹인과 장애자를 위한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다:

- 65 세 이상 (“연장자”); 혹은
- 장애인

나는 사회보장 보조 (SSI) 를 받을 자격이 되는가?

당신은 다음조항에 해당이 되면 사회 보장 재정 보조 (SSI)를 받을 수 있다:

- 1996년 8월 22일부로 사회보장 보조(SSI)를 받고 있었거나 신청 접수를 해놓은 자; 혹은
- 1996년 8월 22일부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었던 자격을 갖춘 이민자\* 이면서 동시에 장애인이거나 맹인인 자;
- 재향 군인이나, 현역 군인, 혹은 그의 배우자나 그의 아이; 밀입국 업자의 피해자; 미국 밖에서 출생한 아메리칸 인디안계 국가에서 온 자; 그리고 동시에 장애인이거나 맹인이거나 연장자인 자;
- 법적 영주권 자로서 40 쿼터의 일을 하여 사회보장세금을 낸 크레딧이 있는자 (그리고 1996년 8월 22일 이후에 입국 했다면, 최소한 5년 동안 자격을 인정 받은 이민자\* 인 경우) 그리고 동시에 장애인이거나, 맹인이거나, 연장자인 경우;
- 피난민, 망명인, 큐바/하이티에서 온 입국자, 미국인과 아시아인 사이의 혼혈인, 혹은 출국/추방이 보류된 자; 그와 동시에 장애인, 맹인 또는 연장자인 자. 그러나 입국 허가를 받은 후 처음 7년 동안만 해당되며 그 후에는 다른 부분에서 자격이 되는 경우에만 당신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
\*당신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 사회보장 보조 (SSI) 를 받을 자격이 인정되는 이민자이다. 법적 영주권자; 피난민, 망명자, 하이티/큐바에서 온 입국자, 출국/추방이 보류된 자; 특수한 환경에 처한 구타된 배우자나 아이; 1980년 4월 1일 이전에 최소한 1년동안 가석방되었거나 조건부 입국을 허용받은 자.

## 내가 맹인과 장애자를 위한 보조(AABD)를 받을 자격이 되나?

당신은 다음 조항에 해당되는 사람이면 맹인과 장애자를 위한 재정 보조 (AABD financial assistance)를 받을 수 있다:

- 사회보장 보조 수혜자(SSI);
- 1996년 8월 22일 당시 미국에서 법적으로 거주한 법적 이민자\* 로써 65세 이상이고 “비장애인” 판정으로 해서 사회보장 보조가 거부된 자.

또한 당신이 시카고 시에 거주하는 경우 사회보장 보조 (SSI) 신청기간 동안 과도기에 주는 보조 (Transitional Assistance)를 받을 수 있다.

\* 당신이 다음 조항에 해당되는 사람이면 맹인과 장애자를 위한 재정 보조 (AABD financial assistance)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이민자에 해당된다. 합법적 영주권자, 피난민자, 망명자, 미국인과 아시아인의 혼혈인, 하이티/큐바에서 온 입국자, 호몽이나 하일랜드 라오스인, 특정한 아메리칸 인디안 국가에서 온 자, 출국/추방을 보류받은 자; 특정한 상황하에 구타로 피해 입은 배우자나 그 자녀, 1980년 4월 1일 이전에 최소 일년간의 가석방을 받은 자나 조건부 입국이 허가된 자.

## 만일 사회보장 보조나 연장자, 맹인과 장애자를 위한 보조를 받으면 시민권 신청 시 지장이 있는가?

### 염려 마세요!

어떤 종류의 정부보조를 받았다해도 정식으로 보조를 받았기만 하면 시민권 신청시 아무 지장이 없을 것이다.

정보가 더 필요하면 일리노이 이민 난민 권익 옹호 연합에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.  
(312) 332-7360; 팩스: (312) 332-7044; 이메일: [info@icirr.org](mailto:info@icirr.org)